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증명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의 구성 조합을 기존 아라비아숫자에서 반드시 로마자 및 특수문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제3항단서 신설)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8제2항의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안 제5조제4항)
- 전자증명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구성 조합을 기존 아라비아숫자에서 반드시 로마자 및 특수문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단서 신설)
- 등기관이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해 비밀번호 설정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1항)
- 법원행정처장이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가능

한 용도에 대하여 지정·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할 경우 사용 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항)
-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양식에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하도록 양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

3.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발급한 전자증명서에 장애가 발생하여 초기화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 소지하는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바이러스 감염 등 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의 장애요인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등기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고, 발급용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등기관은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말 것

나.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별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용등록 시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통하여 숙지할 것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로서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USB)에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 각 호의 사용용도 중 일부를 제한하여 지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인터넷등기소의 안내에 따라” 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안내를 받고,”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증명서는” 을 “전자증명서(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저장매체에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제외)는”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발급할 때 6개에서 8개까지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전자증명서 비밀번호와 6개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②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② 등기관은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말 것

나.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별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용등록 시 인터넷등기소의 안

③ ~ ⑤ (생략)

제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인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9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안내에 따라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내를 통하여 숙지할 것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로서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USB)에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 각 호의 사용용도 중 일부를 제한하여 지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①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안내를 받고,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① (생략)

②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증명서(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저장매체에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제외)는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